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조치 의무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추가〉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6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조치 의무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추가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1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조치 의무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제5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①·② (생략)	제38조(안전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면서¹⁾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소가 추락, 붕괴, 물체 낙하 등 물리력이 위험의 발생 원인인데 반하여 개정안은 근로자를 둘러싼 기온이 위험 요인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1)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2)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다만,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볼 수 있고, 현행법상 ‘건강상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안전조치’가 아닌 ‘보건조치’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제39조제1항제7호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³⁾

고용노동부도 이미 현행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됨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고 있어 법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3) 제39조(보건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등)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24.10.22. 개정